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_전국표준시범사업

항 목	내 용
①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② 서비스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li> <li>▷ 욕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li> <li>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li> <li>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li> <li>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li> </ul> </li> <li>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li> </ol> </li> <li>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li> <li>-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는 심리평가도구인 K-CBCL, K-ARS, RCMAS, K-PRC, K-CYP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li> <li>-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해당기관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li> </ul> </li> <li>*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li> <li>*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li> </ul>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li> <li>▷ 제공기관장(슈퍼바이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기관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슈퍼바이저 1인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겸직할 수 있음.</li> <li>2. 슈퍼바이저는 제공기관의 인력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li> <li>* 관련 전공은 [별표2]의 교육과정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정함</li> <li>* 기존 제공기관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3년 후 미충족 기관은 제공기관으로서 자격기준 미달로 간주함</li> <li>*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기관장 또는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li> </ul> </li> </ol> </li> <li>▷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의한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상심리사</li> <li>2)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li> </ol> </li> </ul>

항 목	내 용												
	<p>1.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아동·청소년발달지원 관련 이론교육을 총 135시간(3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해당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존 제공인력 중 이수 교육시간과 실무 경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수 교육 및 실무경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3년 후 미충족자는 제공인력으로써 자격기준 미달로 간주          * 기존 제공인력 중 교육시간 기준(총135시간)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1]의 교과목을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이수해야 함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p> <p>3)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전공 관련 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2]와 같다)</p> <p>①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 놀이치료,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과목을 이수한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대학에서 심리, 상담, 놀이치료,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과목을 이수한 전공자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장기적으로 제공인력의 자격요건은 민간자격증 취득자 보다 대학, 대학원에서의 전공 교과목 이수자를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계획임</p>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용자 등급</th><th>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th><th>2등급 (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th><th>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50%이하)</th></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td>162,000원</td><td>144,000원</td><td>126,000원</td></tr> <tr> <td>본인부담금</td><td>18,000원</td><td>36,000원</td><td>54,000원</td></tr> </tbody> </table> <p>* 단, 지역별, 기관별 가격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가격차율 허용)</p> <p>▷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월</li> <li>-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li> <li>-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석사이상 취득 후 해당 분야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 제공인력도 인정)의 재판정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li> </ul>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 서비스 제공</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서비스내용</th><th>서비스횟수</th></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td> <p>① 언어프로그램</p> <p>: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치료프로그램</p> <p>언어장애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언어로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자가 되게 함.</p> <p>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언어적 중재는 언어장애아동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p> </td><td>월4회(주1회) (회당 50분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td></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p>① 언어프로그램</p> <p>: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치료프로그램</p> <p>언어장애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언어로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자가 되게 함.</p> <p>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언어적 중재는 언어장애아동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p>	월4회(주1회) (회당 50분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p>① 언어프로그램</p> <p>: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치료프로그램</p> <p>언어장애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언어로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자가 되게 함.</p> <p>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언어적 중재는 언어장애아동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p>	월4회(주1회) (회당 50분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항 목	내 용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p><b>② 놀이프로그램</b>            :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p> <p><b>③ 미술프로그램</b>            :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미술표현 자체가 심리적 승화작용과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행동을 조절하고 자존감 향상과 스트레스 분출을 통한 문제행동 감소를 가져와 원만한 상호소통과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p> <p><b>④ 음악프로그램</b>            :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p> <p><b>⑤ 심리상담프로그램</b>            :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            -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 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 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 검사도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p>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항 목	내 용
	<p>▷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유타,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li> </ul> <p>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상담 및 유타 파악</li> <li>-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li> <li>-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 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li> <li>-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 의 평가도구를 활용함.</li> <li>-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유타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시 재검사없이 그대로 활용가능함.</li> <li>-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li> <li>-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li> </ul> <p>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li> <li>-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li> <li>-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li> <li>- 서비스 중간점검 (필수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li> <li>·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유타변화</li> <li>·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li> </ul> </li> </ul> <p>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유타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li> <li>-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평가서 작성</li> <li>-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유타조사</li> <li>-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li> <li>- 서비스 종료 통보</li> </ul>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1:1)을 원칙으로 함.</li> <li>-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 허용</li> </ul>
⑦ 기타	<p>▷ 서비스 제공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li> <li>· 연계시설 지정(추가지정시설)</li> <li>• 지역적 여건에 따라 이용시설 연계가 필요한 경우(예, 인근지역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등) 관할 기초(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추가지정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li> </ul>

[별표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시 재검사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 P-FA
	놀이/미술/음악 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텐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